육상경기인 윤리강령

Ⅰ. 전 문(前文)

육상경기인은 우수한 지도자와 선수를 육성하여 국위선양을 도모하고, 육상경기를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체육 진흥 에 이바지해 나가야 한다.

육상경기인은 이러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하여 올바른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함을 재인식하고,

다음의 『육상경기인 윤리강령』을 반드시 지키고 따라야 할 행동규범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정하여 성실히 준수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 육상경기인 윤리강령

- 대한민국의 모든 육상경기인(이하 '육상인'이라 칭함)은 제(諸)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스스로 명예와 품위를 지켜 대한민국 육상계의 선도자(先導者)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망(信望)을 얻는 체육인이 되어야 한다.

- 육상인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받고, 각자의 자질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평가와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자신의 전문지식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

- 육상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되며, 준법(遵法)과 청렴(淸廉)의 의무를 준수한다.

- 육상인은 선·후배와 동료의 상호간에 존중과 신뢰로서 대하며, 상대방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육상 지도자는 자신의 품성과 언행이 선수의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선수에게 사랑과 봉사로서 헌신하여야 한다.

- 육상 선수는 항상 단정하고 당당한 자세로 경기에 임할 뿐 아니라, 심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에 임해서는 스포츠맨십에 의해 정정당당히 겨루어 선배들이 이어 온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나간다

- 공인 심판은 경기장의 질서를 경기의 기록 결과 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며, 경기 진행 관리와 심판 질서에 이르기까지 경기장 내의 모든 사항들을 솔선수범하고 지도함으로써 경기장의 기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 육상인은 상생(相生)의 정신으로 서로 단결하고 협력하여 다른 경기단체와 체육계의 귀감(龜鑑)이 되어야 하며, 급변하는 스포츠 환경에 변화의 주체로서 자기계발에 힘쓴다.

3. 윤리강령의 적용

- 『육상경기인 윤리강령』은 '대한민국의 모든 육상경기인(육상원로, 공인심판, 지도자, 선수, 대한육상경기연맹 임직원을 비롯 산하연맹, 각 시도육상경기연맹의 임직원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 육상경기인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윤리적 권고와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1. 일반기준
   가. 징계의 정도에 있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별표 기준에 따른다.
   나. 위반행위를 불문하고 2회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징계기준의 2배 이상 가중 처분하며, 3회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명 또는 파면한다.

2. 개별기준

징계대상	위반행위	징계기준
1. 심판 및 임원 (주최자)	가. 심판배정 상 불공정 행위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과실 및 경기진행 미숙	자격정지 1년 이하
2. 지도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 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부정선수를 출전시킨 사람	자격정지 3년 이상
	라. 선수지도 감독 소홀에 의한 물의를 야기한 사람(교사)	자격정지 1년 이상
	마. 물의야기를 방조한 자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바.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ㅇ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ㅇ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3. 선수	가. 심판판정 불복 폭언	출전정지 6개월 이상
	나. 심판에 대한 폭행	출전정지 2년 이상
	다. 부정선수 출전	출전정지 1년 이상
	라. 선수상호간 폭행	
	ㅇ주동자	출전정지 1년 이상
	ㅇ가담자	출전정지 6개월 이하
4. 기타 임원 (참가자)	가. 심판판정 불복(경기지연)폭언	자격정지 1년 이상
	나. 심판 및 선수 등에 대한 폭행	자격정지 5년 이상
	다. 물의야기를 방조한 사람	자격정지 6개월 이하
	라. 경기장 집단폭행 사태 가담행위	
	ㅇ주동자	무기한 자격정지
	ㅇ가담자	자격정지 5년 이상
5. 단체(팀)	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출전정지 6개월 이하
	나. 경기장 폭행 난동	출전정지 3년 이상

스포츠 폭력 예방과 대처

1. 스포츠 폭력이란?...

스포츠 人(선수, 지도자, 학부모,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 구타하거나 상처가 나게 하는 것.
≫ 어느 장소에 가두는 것.
≫ 겁을 먹게 하는 것.
≫ 강요하는 것.
≫ 물건이나 돈을 빼앗는 것.
≫ 사실, 또는 사실이 아닌 일로 인격이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 남들 앞에서 창피를 주는 것.
≫ 계속해서 반복하여 따돌리는 것.

2. 상황별 폭력 예방법

1) 경기장 및 훈련장

≫ 운동부 기강(군기)을 잡기 위해 다른 선수에게 기합이나 가혹행위(얼차려 · 구타)를 하는 것은 금물.
≫ 훈련과 관련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료선수에게 자신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켜서는 안됨.
≫ 동료선수의 수업 복귀 시간, 자유시간, 귀가 시간 등을 강제로 조정해서는 안됨.
≫ 훈련 및 시합에서 동료선수의 인격 ·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은 금물.
≫ 선수 폭력의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경우라도 모른척하거나 지나쳐서는 안됨.
≫ 훈련 및 경기 시작 전 준비와 끝난 후에 정리는 선후배 선수가 함께 하도록 함.
≫ 분노에 의한 심한 욕설 · 폭행을 할 것 같은 상황 : 잠시 그 자리를 떠나 화난 감정을 조절.
≫ 어떠한 경우라도 동료선수에 대한 폭력은 금물.

2) 합숙 등 일상생활

≫ 선수는 지도자와 협의하여 만든 생활규칙을 지켜야 함.

≫ 선배 선수는 기합, 얼차려 등을 목적으로 선수들을 집합시켜서는 안됨.
≫ 표정, 몸짓, 언어 등으로 협박하거나 모욕해서는 안됨.
≫ 휴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선배 선수는 후배 선수를 등교하게 해서는 안됨.
≫ 다른 선수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혀서는 안됨.
≫ 음주나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하며, 동료 · 후배 선수에게 강요해서도 안됨.
≫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거나 운동용품, 옷, 휴대폰, 교통카드 등의 개인 물품을 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합숙소 등 공동시설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다른 선수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됨.
≫ 합숙소 출입 시 반드시 감독자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함.
≫ 잘 못한 일이 있을 경우 신속히 사과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함.

3. 스포츠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즉시 지도자, 담임교사, 학교장 등에게 알릴 것.
≫ 학교 내 설치된 신고함에 신고할 것.
≫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반드시 상담 · 신고할 것.
※ **대한체육회 스포츠人권익센터 : ☎ 02)4181-119**
≫ 폭력 피해 시 본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도자 · 담임교사 · 학교장 등에게 요구할 것.
≫ 폭력 당할 때의 상황을 기억했다 기록할 것(시간, 장소, 목격자, 폭행 방법 등).
≫ 폭력 당한 후 신체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낄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을 것.
≫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을 경우, 피해 선수에게 즉시 사과하고 재발행동을 하지 말 것.
≫ 폭력 장면을 목격하거나, 폭력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을 땐 즉시 지도자, 담임교사, 학교장 등에게 알릴 것.
≫ 폭력이 있을 경우 주변의 선후배나 동료는 즉시 폭행이 중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피해를 입은 선수가 폭력으로 인해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거나, 또는 뼈가 부러졌거나, 출혈이 심할 경우 섣불리 일으켜 세우거나 자세를 바꾸려 하지 말고 119나 근처 전문병원에 연락하고 지도자에게 알릴 것.

스포츠 성 폭력 예방과 대처

1. 스포츠 성 폭력이란?...

≫ 지도자에 의한, 선수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 지위와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협박, 꼬드기는 행위로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함.

≫ 성폭력의 종류 : 성희롱, 성추행, 강간

2. 성 폭력의 종류

□ 성희롱

-〉 성적인 말과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말과 행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해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수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것.
(여성발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의하여 적용)

□ 성추행

-〉 성적인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어나는 간음 이외의 성적 가해 행위.

※ 강제추행 :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여성이나 남성을 성적으로 가해하는 행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적용)

□ 강간

-〉 폭행이나 협박으로 여성을 간음한 행위.

※ 간음 : 남성의 성기를 여성의 성기에 넣는 것.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하여 적용)

3. 상황별 성 폭력 예방법

1) 경기장 및 훈련장

≫ 다른 선수에게 성적 굴욕감 · 성적 혐오감 등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훈련 중 선수간에 마사지 등 신체접촉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에게 허락을 받아야 함.

- 일방적인 신체접촉 · 지시행위는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 다른 선수에게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성적 농담, 모욕적인 말을 해서는 안됨.

≫ 훈련 중 다른 선수의 신체 특정 부위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2) 합숙 및 일상생활

≫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또는 습관적으로 동료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됨.

≫ 동료선수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도록 강요해서는 안됨.

≫ 동료선수에게 성적 농담이나 이야기 등을 하면 안됨.

≫ 다른 선수의 신체 특정부위를 계속 바라보거나 반복적으로 쳐다보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음란물(사진, 동영상, 이메일 등)을 가지고 있거나, 동료선수와 공유 및 배포해서는 안됨.

≫ 다른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벗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다른 사람 앞에서 의도적으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벗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 타인의 인격을 아끼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선수의 몸도 소중함을 알 것.

≫ 평상 시 자신의 좋고 나쁨의 감정 및 생각을 분명히 표현 함.

≫ 운동 시간 외에 지도자와 불필요한 1대 1의 사적인 만남을 가능한 갖지 않음.

≫ 운동부 내 성폭력 피해 선수들이 있는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의심이 나거나 피해가 있는 선수를 발견하면 학교장, 지도자, 부모, 상담교사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림.

4. 스포츠 성 폭력에 대한 대처방법

≫ 다른 사람(지도자, 선후배, 동료 등)으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폭력임을 알리고 즉시 그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 함.

≫ 가능한 성폭력 피해 상황을 즉시 벗어나도록 함.

≫ 피해 선수는 증거를 보존해야 함.

- 피해 당시 옷차림 그대로, 몸은 씻지 않고, 상처 등도 치료하지 않은 채 병원으로 감.
- 가능한 빨리(48시간 이내) 의료 · 관련기관(산부인과, 비뇨기과, 여성 · 학교폭력피해자 ONE-STOP지원센터)에 가서 치료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둘 것.

- 피해를 경험한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내용, 목격자 · 증인, 성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느낌 등.

≫ 피해 선수는 피해 사실을 숨김없이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익센터, 학교장, 지도자, 부모, 상담교사, 수사기관, 관련기관 등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알림.

≫ 성폭력 행위를 한 선수는 피해 선수에게 즉시 사과하고 재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함.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스포츠人권익센터 ☎ 02-4181-119
(위치 :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앞 현대토픽스 빌딩 1902호)

☆ 경찰서 ☎ 112

☆ 학교폭력근절 신고센터 ☎ 117

☆ 헬프콜 청소년 전화 ☎ 1388

도 핑 방 지 가 이 드

도핑검사

운동선수에게 도핑검사는 매일 반복하는 훈련처럼 은퇴하는 순간까지 본인의 삶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듯 삶의 일부분인 도핑검사가 선수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전세계의 도핑방지기구들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모든 도핑검사는 똑같은 검사인가요?

*** 도핑검사는 2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구분된다.**

첫번째는 시료의 채취시점에 따른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이다. 경기 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의 차이는 시료를 통해 검사하고자 하는 금지약물 및 방법의 범주가 다르다는 것이다(경기기간 중에 더 많은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이 지정되어 있음).

두 번째는 채취되는 시료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현재까지 선수들의 도핑검사를 위하여 활용되는 생체시료는 소변과 혈액, 두 가지 종류를 활용하고 있다. 소변과 혈액을 통해 검사 가능한 항목이 다르므로, 선수는 검사지시서에 명시된 시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도핑검사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도핑검사의 시료채취 절차는 다음과 같다.**

01. 통지 및 동행

❶ 선수가 검사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선수는 도핑검사관(Doping Control Officer : DCO) 또는 도핑검사동반인(Chaperone)으로부터 검사대상자가 되었음을 통지받게 될 것이다. 이때 통지자는 선수에게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학생증 등)을 요구할 것이다.



❷ 통지 후 선수는 최대한 빨리 도핑관리실로 이동하여 도핑검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상황의 경우 DCO와 논의하여 도핑검사의 지연이 가능하다. 검사대상자임을 통지받은 후 검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선수는 DCO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이 감독 가능한 시야 내에서 활동 하여야 한다.



02. 시료제공

❶ 소변시료 제공

a. 선수가 시료제공을 할 준비가 되면 선수는 시료채취용기를 선택한다.



b. 선수는 선택한 시료채취용기를 가지고 동성의 DCO 또는 도핑검사동반인과 함께 시료채취실로 이동 후 감독 하에서 90ml 이상의 소변을 채취한다. 이때,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선수는 선수대리인과 동행 할 수 있다.



c. 시료채취 후 도핑검사실에서 선수는 제공되는 시료채취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고 파손여부를 확인한다.



d. 확인 후 선수는 자신의 소변시료를 키트 내의 2개의 시료병에 나누어 담고 잠근다. 이 과정은 선수 본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선수 요청 시에만 DCO 또는 선수 대리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e. 시료분배 후 DCO는 시료의 비중을 확인한다.



❷ 혈액시료 제공

a. 혈액시료 채취를 위한 혈액채취요원(Blood Collection Officer : BCO)은 혈액채취가 가능한 의료종사자 중 도핑방지기구의 도핑검사 교육과 자격검증을 통과한 인력으로 구성 된다.



b. DCO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으로부터 혈액검사대상자임을 통지받은 선수는 도핑검사실 도착 후 시료채취 제공 전 까지 적절한 휴식시간을 제공 받아야 한다.



c. 휴식시간이 제공된 후 혈액채취절차가 진행되면, 선수는 혈액시료채취키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밀봉상태, 키트의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한다.



d. BCO는 선수의 혈액채취를 위하여 혈관을 선택하고 키트를 개봉하여 진공튜브에 혈액을 채취한다.



e. BCO는 혈액이 채취된 진공튜브에 키트내 라벨 테입을 부착하고 혈액 시료 보관 용기에 넣어 봉인한다.



03. 서류작성



❶ DCO는 검사과정 중 서류를 순차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❷ DCO는 선수에게 최근 복용한 처방 또는 비처방 약물, 건강보조제에 대하여 확인하고, 승인받은 TUE 내역이 있는지 점검한다.



❸ 모든 도핑검사서의 작성이 완료되면 선수는 DCO의 요청에 따라 도핑검사서의 내용과 도핑검사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최종 서명을 한다.

❹ 최종서명 후 선수는 도핑검사서의 선수용 용지를 DCO로부터 전달 받는다.

04. 시료전달



시료채취과정이 종료되면 DCO는 시료 및 관련 서류들을 지정된 운송 수단을 통하여 시험실로 전달한다.

시료채취과정 중 선수의 권리와 책임은 무엇인가요?

* 선수의 권리

선수의 권리	
1	DCO와 BCO를 포함한 도핑검사인력의 신분확인
2	선수대리인 또는 본인의 올바른 의사전달을 위한 통역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3	경기기간 중 검사 시 특정 사유로 도핑검사실 지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의료처치, 메달수여식, 후속경기참여, 정리운동)
4	장애로 인한 검사 및 조사 국제표준의 조정이 필요할 때 이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5	검사용품의 선택 및 교체(검사용품의 파손, 불량 등)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도핑검사서의 사본을 받을 권리

* 선수의 책임

선수의 책임	
1	신분 확인을 위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할 의무
2	도핑검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 받고 최대한 빨리 도핑검사실에 도착하여 검사에 참여 할 의무 (단, 선수의 권리에서 언급된 활동 시 DCO와 협의를 통해 예외 가능)
3	검사대상자 선정 통지 후 시료채취 종료시점까지 DCO 또는 도핑검사동반인의 시야 안에서 활동할 의무
4	시료채취과정 중 본인의 시료를 직접 관리하고 봉인 할 책임

도 핑 방 지 가 이 드

금지목록 국제표준

세계도핑방지기구(World Anti-Doping Agency: WADA)는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도핑방지활동에 대하여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책임 수행의 일환으로 WADA는 최소 연1회 이상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을 수록한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개정 발표한다.

선수에게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WADA가 금지목록 국제표준으로 지정하는 기준은 아래 3가지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때이다.**

1. 경기력을 향상시키거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선수의 건강에 실제적 또는 잠재적 위험이 되는 경우
3.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경우

선수에게 금지되는 약물이나 방법은 항상 똑같은가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은 검사시점, 선수의 성별, 참여 종목 등 조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이곳에는 금지되는 약물 및 방법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며 금지약물 및 방법에 대한 전체 내용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금지약물검색서비스 www.kada-ad.or.kr/page/100c02 에서 확인할 수 있음).

01. 상시 금지되는 약물과 방법 (경기기간 중 검사와 경기기간 외 검사 모두 해당)

*** 금지되는 약물**

S0. 비승인약물

– 약물로써의 기능 및 위험성 등 약물에 관한 일부 또는 전체 정보가 규명되지 않아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모든 약물

S1. 동화작용제

– stanozolol, testosterone, clenbuterol, tibolone 등

지도자를 위한 도핑방지가이드

지도자의 의무와 책임

지도자는 선수들을 위하여 훈련환경 조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 교육, 개인 컨디션 조절 등 수많은 부분들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력과 관련된 이러한 수많은 요인들뿐만 아니라 도핑방지활동과 같은 경기력 외적 요인들도 지도자가 관리하고 지도해야 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에 해당된다. 선수와 지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긴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로 쌓아 온 명성과 자부심이 아주 작은 부주의와 무지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선수는 선수로서 도핑방지활동에 대한 몇 가지 의무와 책임을 가지게 된다. 지도자는 선수를 위하여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다. 선수가 도핑검사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갖게 되는 다양한 의무와 권리 중 몇 가지의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선수는 도핑검사과정 중에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지도자도 선수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도핑검사를 진행하는 도핑검사관 또는 혈액채취요원들의 자격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장애를 가진 선수일 경우 선수가 가진 장애에 따른 검사과정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와 더불어 선수는 일정한 책임도 함께 부여받는다. 선수는 도핑검사 과정 중에 시상식, 의료적 처치, 후속경기 참여 등으로 검사실 도착 지연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유를 도핑검사관에게 명확히 언급하고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조율 할 책임을 가진다. 또한 검사의 진행을 위해서 검사대상 선수는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사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수가 훈련 및 대회 참여시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지도자는 항상 주지시켜야 한다. 도핑방지규정으로 정하는 좀 더 상세한 선수의 책임과 의무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200c00)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도자를 위한 도핑방지가이드

소변시료 채취

선수가 도핑검사관으로부터 검사대상자로 소변시료제공을 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시료 제공 시점까지 항상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 소변시료 제공 시에는 선수와 동성의 도핑검사관 또는 입회샤프롱이 시료채취실에 동반하여 시료 제공과정을 직접 확인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100f01) 를 통해 보다 더 상세한 소변시료 채취 과정을 확인 할 수 있다.

혈액시료 채취

선수는 도핑검사관 또는 샤프롱으로부터 소변시료가 아닌 혈액시료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때 제공되는 혈액의 양은 매우 적은 양이므로 지도자는 선수가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단, 선수가 채혈에 대한 심리적 질환이나 채혈도구에 대한 쇼크 증상, 혈액응고 장애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전에 혈액채취요원에게 고지하여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선수는 혈액시료제공 전 휴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핑검사관은 적정 시간의 휴식을 제공한다. 보다 상세한 혈액시료채취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100f02) 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지도자를 위한 도핑방지가이드

18↓ age 미성년 선수의 시료채취

만약 선수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선수라면 지도자는 선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선수 대리인으로 도핑검사의 전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선수가 시료채취과정에 지도자가 함께 참여하기를 요구하고 도핑검사관이 승인한다면 지도자는 시료채취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다.

금지목록 국제표준

전세계의 도핑방지활동을 관장하고 조율하는 WADA는 최소 연 1회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개정하여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WADA의 금지목록 국제표준에 포함되는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은 다음에 언급하는 3가지 요인 중 2가지 이상에 부합되는 것들이다.

- 잠재적 또는 직접적으로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칠 때
- 즉각적 또는 잠재적으로 선수들의 건강에 위해하는 요인이 될 때
- 스포츠정신을 저해할 때

지도자를 위한 도핑방지가이드

금지약물 검색서비스

지도자 또는 선수가 매년 변경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의 정보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의약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금지약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선수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개정되는 금지목록 국제표준을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 승인한 의약품의 정보와 비교하여 금지약물이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금지약물검색 시스템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시판 되었거나 시판 중인 약품만 검색이 가능하다. 금지약물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 www.kada-ad.or.kr/page/100c01 로 접속하면 된다.

만약 선수가 해외 훈련이나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의학적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각국의 도핑방지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복수의 국가가 협력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 웹페이지 (www.globaldro.com) 를 이용하면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금지약물검색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02)2045-9843** 로 연락하면 담당자를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및 처리과정

선수는 일상적인 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뿐만 아니라 장시간·고강도 훈련으로 인한 신체적 이상,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접촉성 또는 비접촉성 부상 등 일반인들 보다 더 많은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의료적 처치과정 중에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선수는 치료목적사용면책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료처치 및 약물 복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

선수가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하는지를 아래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1. 선수가 치료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약물을 인터넷 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
   www.kada-ad.or.kr/page/100c01
2. 금지약물로 검색될 경우, 대체약물 처방이 가능한지 의료진과 논의
3. 대체약물의 처방이 불가능하다면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대회를 앞두고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는 경우 최소 대회시작 30일전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4.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서의 모든 내용을 의료진과 함께 빠짐없이 기재하고 진단관련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를 첨부하여 한국도핑방지위원회에 제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접수된 치료목적사용면책이 승인되면 선수는 승인되는 약물과 사용법, 사용 기간 등이 명시된 치료목적사용 면책 승인서류를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치료목적사용면책이 거부된다면 선수는 항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선수가 응급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의료적 처치를 받게 된다면 선수는 본인이 받은 모든 의료적 처치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여 최대한 빨리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도자를 위한 도핑방지가이드

소재지정보제출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또는 소속 국제연맹의 소재지정보제출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지도자는 해당 선수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확인하여 선수가 소재지정보제출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선수가 소재지정보제출대상자가 되었음을 통지를 받게 되면 선수는 매분기별 자신의 거주지, 훈련장소 및 경기 장소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정확한 소재지 정보를 도핑방지행정관리시스템(ADAMS)을 통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다음 분기 동안 각 일자별로 특정 60분 단위시간(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 사이)과 지정된 특정 60분 단위시간 동안 검사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장소를 소재지 정보에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소재지정보 입력기한 및 적용기간

분기	입력기한 (마감일)	적용기간
1	12. 31	1. 1 ~ 3. 31
2	3. 31	4. 1 ~ 6. 30
3	6. 30	7. 1 ~ 9. 30
4	9. 30	10. 1 ~ 12. 31

소재지정보를 입력 후 훈련 또는 경기 일정의 변화로 특정 60분 단위 시간 정보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ADAMS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소재지정보제출 대상 선수는 12개월 동안 총 3회의 검사불이행 또는 제출 불이행 발생 시 도핑방지규정위반으로 징계를 받게 된다.

결과관리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검사를 통해서 발생한 시료의 양성반응 또는 기타 도핑방지규정위반에 대하여 제재관리를 진행한다.

만약 선수에게 도핑방지규정위반이 발생하였다면 도핑방지기구는 선수에게 서면으로 도핑방지규정위반을 통지한다. 선수의 청문회 및 제재를 위해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독립적 권한을 가진 청문위원회와 제재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선수들은 청문절차를 통하여 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과된 제재를 인정할 수 없을 경우 선수는 물론 관계된 도핑방지기구들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항소는 선수의 경기력 수준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항소위원회 또는 스포츠중재재판소로 제기할 수 있다.

- 결과관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 (www.kada-ad.or.kr/page/200d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장시설 안전

가) 시설관리자는 시설 사용 전에 선수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장구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한다.

나) 시설을 청결하게 관리한다. (벌레, 화장실 불편, 편의시설 부족)

다) 경기장 시설의 유지 · 관리를 위해 경기장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가 필요한 곳은 대회 전에 보수를 마친다.

라) 대회 진행시 고장이 나지 않도록 냉난방장치를 사전에 점검한다.

마) 대회기간 내에서는 공동체 질서를 존중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화재 발생 시

가)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화재발생 시 무질서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다) 성냥, 라이터, 촛불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라) 한 개의 콘센트에 전기 플러그를 여러 개 꽂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

마) 플러그는 반드시 몸체를 잡아서 뽑는다.

바) 인화성 기체(부탄가스)를 소지하거나 함부로 놓지 않는다.

ⅰ. 화재 발생 시 대처방법 (경기장 및 숙소)

①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②화재경보 신속히 비상벨을 누른다.

③엘리베이터는 절대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계단을 이용한다.

④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한다.

⑤낮은 자세로 안내원의 안내를 따라 대피한다.

⑥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싼다.

⑦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손잡이를 만져보고 행동한다.

⑧어린이는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포에 질려 옷장, 침대 밑에 피신하는

⑨경우가 많으므로 안전한 대피를 위해 자녀의 위치를 항상 확인한다.

⑩대피한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린다.

⑪밖으로 나온 뒤에는 절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ⅱ. 소화기 사용방법

①작은 화재의 경우에만, 바람을 등진 채 소화기로 불을 끈다.

②방사 개시 후 불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한다.

③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

④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골고루 뿌린다.

안전교육 매뉴얼

♠ 경기장 및 건물 붕괴 시

가) 건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주변을 살펴서 대피로를 찾는다.

나)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안전한 곳으로 임시 대피한다.

다) 완강기, 로프, 손전등 등 탈출에 필요한 물품을 찾아 건물 밖으로 탈출 가능한 통로를 찾아야 한다.

라) 대피 중 위급상황에 대비해 건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리자 및 지도교사를 선두로 하여 이동해야 하며,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한다.

마) 안전지대에 있는 경우는 그 곳에 머무르고 부서진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는다.

바) 붕괴건물에서 탈출한 진행요원 및 학생들은 추가붕괴, 가스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으니 피해가 없도록 사고현장에 접근하지 않는다.

♠ 잔해에 깔린 경우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하지 말고 가급적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요청한다.

파이프 등을 규칙적으로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손전등을 비추거나 휴대전화로 119에 신고한다.

낙하물에 대비하여 담요, 신문, 박스 등으로 머리와 얼굴을 보호한다.

잔해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된 경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수시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인다.

♠ 식중독 예방

항상(특히 식사 전, 화장실 사용 후, 재채기 후) 손씻기를 생활화한다.

식사 도구(식판, 수저, 조리도구)는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깨끗이 사용한다.

비위생적인 조리식품 및 불량식품을 사먹지 않는다.

물은 끓여먹고, 날음식은 삼가며 변질이 의심되면 버린다.

냉장, 냉동식품은 보관 상태를 확인한다.

♠ 응급환자 발생 시

사고 발생 시 대회본부 및 진행요원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사전에 학생교육을 실시한다.

대회진행요원은 돌발적인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에 대한 간단한 응급처치와 안전지대로의 대피 등을 신속히 조치한다.

응급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대기 중인 엠블란스를 타고 신속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다.

사고 발생 시 대회진행요원은 침착하게 행동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한다.

모든 대회진행요원은 책임감 있는 태도와 담당자로서 의무 이행한다.

* 국민안전처/ 교육청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매뉴얼 자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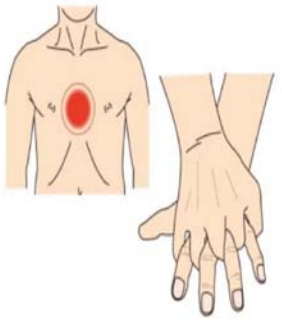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 방법안내



1. **심정지 확인(반응 및 호흡 확인)하기** 우선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고, 쓰러진 사람의 반응 및 호흡상태를 확인합니다.



2. **119 신고와 도움요청하기** 주변에 도움을 요청 및 119에 빠르게 신고하고 발견장소 및 현 상황을 알립니다.



3. **가슴압박 위치잡기** 양손을 깍지 끼어 손꿈치로 가슴 중앙을 압박하되, 손가락 끝이 몸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4. **가슴압박 30회 시행하기** 팔꿈치를 펴서 팔이 바닥에 수직을 이룬 상태로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압박을 시작합니다.



5. **기도 유지 후 인공호흡 2회 시행하기** 기도를 확보(머리를 젖히고 턱 들기)한 후 인공호흡을 시행하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하면서 1회/1초, 총 2회 시행합니다.



6.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병행하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시행비율은 가슴압박 30회, 인공호흡 2회로 번갈아서 시행합니다.